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 개정으로 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’가 도지사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함.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금번 조례개정은 지난 1월 20일 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의 개정으로 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’가 도지사의 권한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운수사업 경영자 연수교육과 보고·검사 업무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의 공동 권한으로 되어 있는 바 위탁사무에서 삭제하여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제28조 (경영자연수교육)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(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)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2.8.26, 2004.1.20>

제44조 (보고·검사)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2.8.26, 2004.1.20>

붙 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